

정정보도청구권제도의 일반적 고찰

박용상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I. 서

1. 정정보도청구권의 입법경위

현대의 모든 자유국가는 민주주의의 헌법질서를 직접 구성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제도로서 언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특히 신문, 통신, 방송 등 이른바 매스 미디어는 공적인 이해사항에 관하여 취재, 보도, 논평함으로써 국가적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여론형성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스 미디어가 공적 이해에 관계된 개인의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고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로 허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신속한 보도를 추구하는 나머지 오보가 야기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나아가 악의에 의한 왜곡보도나 편파보도가 행해진다면 매스 미디어의 엄청난 공시효과 때문에 보도의 대상이 된 개인의 명예나 인격상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 그뿐 아니라 현대 대중사회에서 상업주의에 지배된 선정주의적 보도경향은 개인의 사적 정보를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매스컴에 의한 개인법익침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국에서는 헌법과 사법적인 측면에서 법적인 해결책이 시도되게 되었다. 그 하나는 개인의 보호 받아야 할 법익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하려는 노력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개인법익을 구제하는 제도를 재검토하고 보다 실효성이 있는 구제제도를 모색하는 노력이었다. 미국에서는 금세기초에 매스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개인법익침해에 대한 반성에 의하여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판례법에 의해 인정받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이론에 의해 전후 헌법이 규정한 인간의 존엄권에 근거하여 사법상 일반적 인격권(allgemeine Persönlichkeitsrecht)이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인정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 3 공화국 헌법 (1962 12 26 제 5 차 개정)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상 최고의 가치규범으로 규정한 이래 제 5 공화국 헌법 (1980. 10. 27 제 8 차 개정)은 그와 함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권리를 새로이 규정하게 되었다.

새로운 권리로서의 인격권은 여러 측면에서 구체적 보호를 위한 법제도상의 장치를 요구하는 것이었지만 특히 언론과의 관계에서는 각별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대중사회, 정보화 사회로 이행하는 현대사회에서 언론에 의한 개인법익침해의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존의 구제제도는 개인에게 만족할 만한 구제책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반박권(droit de response)제도가 각국에서 주목 받게 된 것은 이러한 상황 아래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시하는 제도였기 때문이다. 우리의 제 5 공화국 헌법은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가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고, 헌법의 위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언론기본법(1980. 12 31 법률 제 3347 호)은 정정보도청구권제도를 신설하게 되었다. 언론기본법은 1987년 11월 28일 폐지되고, 그를 대체한 법률로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987.11. 28 법률 제 3979 호 이하 정간물법이라 약칭함)과 방송법(1987. 11. 28. 법률 제 3978 호)이 제정되게 되었는데 정간물 법에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구법의 규정이 수정 없이 답습되었고 그 외에 추후보도청구권이 추가 신설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이 일부 강화되게 되었다. 방송법은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정간물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2. 기존 구제제도의 문제점

언론의 개인법익침해에 대한 구제제도는 일반법제상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이 마련되어 있었다. 형법상 개인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는 명예훼손, 신용훼손 등은 범죄를 구성하여 처벌 받게 된다(형법 제 309 조, 제 313 조). 민법상으로는 언론보도가 위법하게 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민법 제 750 조), 피해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민법 제 751 조) 특히 민법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 특칙으로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 764 조).

그러나 이들 종래의 구제제도는 언론에 의한 개인법익침해의 경우 피해자에게 필요하고도 충분한 수단을 주지 못하였다. 첫째로 이들 제도는 일반소송절차에 의해 처리되므로 그 구제를 위하여는 장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피해자 측에게 소송비용 등 과도한 비용과 노력을 요구하게 되어 신속하고 용이한 구제수단이 될 수 없었다.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개인은 막강한 언론기관을 상대로 대항하는 것 자체가 모험일 뿐 아니라 그 모험을 감행하려는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시간과 돈과 노력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부득이한 권리포기를 결과하게 하였던 것이다.

둘째로 이들 종전의 제도는 구성요건에 있어서 언론 측의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와 손해 기타 법익침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고, 엄격한 증거법칙에 구속되는 통상의 소송절차에서 그 입증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피해의 구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들 구성요건의 입증책임은 민사상 불법행위의 경우 원고인 피해자에게 전가되어 있고, 형법상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언론 측에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데 그 입증이란 불가능한 경우가 보통이다. 언론보도의 개인법익에 대한 침해는 다반사처럼 매일 쉽게 야기되고 있음에 비하여 피해 받은 개인이 언론기관에 대응함에는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이다.

셋째로 법원이나 검찰의 실무에 있어서도 언론기관에 대한 단죄에는 소극적이고 손해배상액의 인정도 소액에 그치는 것이 오랜 관례였다. 그뿐 아니라 명예훼손적 보도가 나간 후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해자가 승소하거나, 언론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언론사에 대한 간접적인 징벌적 효과만 가질 뿐 피해자의 즉각적인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었다(민사소송에서 사죄광고도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하나, 그 판결을 얻는 데 장기간이 소요됨은 물론이다). 언론기본법이 정정보도청구권을 입법화하고 정간물 법이 이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추후보도청구권을 신설하게 된 것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언론보도에 의한 개인법익침해에 대하여 미비한 개인의 구제책을 효과적으로 마련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II. 반론권의 제도적 의의

1. 법적 의의

반론권제도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해 개인의 법적으로 보호 받는 이익영역에 대한 공격이 가해진 경우 그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가 자기의 입장에서 반주 또는 해명을 위해 자신이 작성한 문안의 보도를 당해 언론매체에 무료로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언론법상의 특별한 제도로 규정된 것이다.

따라서 첫째로 이 권리는 언론과 개인간의 사법적 분쟁에 관하여 개인에게 인정된 사법상 권리란 점에서 종래 공법상의 제도로써 관청에 의한 정정강제제도(Berichtigungszwang)와는 성격이 다르다. 후자의 경우 관청의 정정명령을 위반한 언론에 대하여는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반론권은 통상 민사재판권에 의해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절차가 부여되고 있다.

둘째로 반론권은 피해자 자신이 작성한 문안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란 점에서 언론자신이 원보도의 내용을 정정 또는 취소하거나 언론의 사죄내용을 보도할 것을 구하는 종전의 제도와는 판이한 내용을 갖는다. 언론 자신의 정정을 구하는 권리는 이를 강제하는 경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피해자의 고정구제에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나, 반론권에 의하면 보도한 매체에 피해자 자신이 작성한 문안으로 해명 또는 반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제수단으로서 장점을 갖게 된다.

셋째로 반론권제도는 언론보도의 개인법익침해 가능성을 정면으로 시인하고, 이러한 언론보도를 언론자유 의 행사로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상응한 구제책을 베푸는 제도이다. 따라서 반론권의 행사대상이 되는 언론보도는 위법성을 요하지 않고, 언론의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나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이점에서 반론권제도는 종전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도나 형사상 명예훼손죄 등의 제도와 다른 차원의 제도를 의미하게 된다.

언론측의 입장에서 보아 반론을 게재하여야 하는 의무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나 보도에 관하여 위법한 사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언론이 헌법상 보장받는 언론자유 의 행사에 의해 개인의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영역에 관해 논란을 야기한 것을 이유로 관련 피보도자에게 상응하는 언론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요청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상세한 내용은 후술 참조).

넷째로 반론권제도는 신속한 권리회복을 제도의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반론권의 대상이 되는 보도사항의 진실성 여부나 언론의 귀책사유여부를 묻지 않는 반론권의 발생요건상의 규정이나 그 행사 및 구제절차에서 제국의 입법례가 신속성을 위주로 구성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요청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에서 반론권제도는 장기간의 소송절차에 의한 심리가 소요되는 손해배상제도보다 큰 장점을 갖는다.

다섯째로 반론권제도는 언론보도에 의한 공격에 대하여 개인에게 대응한 방어방법을 마련하자는데 또 하나의 제도적 취지가 있다(이른바무기대등의 원칙). 이와 같은 제도적 요청은 개인의 법익을 공격한 보도매체 자체를 통하여 간접 공시효과로써 자신의 말을 공표할 수 있도록 반론조의 내용을 구성하는 입법 예로 나타나고 있다.

2. 제도적 존재의의

우선 반론권제도는 언론과의 관계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상 최고의 가치를 의미하는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데 가장 적절한 제도로써 중요성을 갖는다. 언론의 자유가 아무리 중대한 기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존엄권에서 유래하는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언론이 특정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할 경우 피해자에게는 신속 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헌법상의 요청이기 때문에 보도한 언론매체 자체를 통하여 공격적 보도내용과 동일한 범위의 동등한 효과를 가진 신속한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반론권제도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법익을 조화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제도인 것이다.

둘째로 반론권제도는 진실발견을 위한 공적인 목적에 기여한다. 공공 즉 독자는 언론이 시간적 제약 아래 일방적으로 수집, 공급하는 정보만으로는 진실을 발견할 수 없고, 상대방의 주장까지 들을 수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있기 때문이다. 쌍방의 말을 듣지 않고서는 정의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절차적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반론권제도는 공공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셋째로, 반론권은 제한적이거나 매스 미디어에 대한 개인의 접근이용권(access right to mass media)을 실정법상의 권리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개인이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자는 주장은 언론의 독점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대중사회에서 헌법 및 언론법의 차원에서 심각히 논의되고 있다. 반론권제도는 언론의 보도대상이 된 개인 자신에게 당해 언론매체를 사용하여 자신의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액세스권 이론을 제한적으로 실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로 반론권제도는 공적 기능을 행하는 언론의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몫을 행한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반론보도의무는 스스로 야기한 쟁점에 관하여 상대방의 토론의 자유를 위해 자기의 지면을 할애할 의무를 의미하지만, 언론 스스로가 반대입장에서 개인의 주장을 보도한다면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고, 언론은 실질적인 공론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종전의 실무경험을 보더라도 일방적 취재나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에 대하여 반론권행사가 빈번하였던 사정을 보면 반론권제도는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로써 간과할 수 없는 기능을 갖는 것이다.

III. 반론권제도의 연혁 및 입법례

1. 연혁

언론보도에 의한 잘못을 시정하고 언론자유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는 언론의 사전검열로부터 해방되기 이전에 관청에 의한 정정강제(Berichtigungszwang)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경찰국가적 후견사상에 입각하여 국가가 언론을 지도한다는 사고에 근거한 것이었으므로 오늘날의 반론권제도와는 판이한 것이다.

개인의 권리로서 언론보도의 오류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것은 프랑스 혁명기에 국회위원이었던 뉘로르(Dulaure)의 창안에 의한 것이었다.

프랑스 인권선언(1789)에 의해 검열제도가 폐지되자 언론은 무절제한 비방과 인신공격의 도구로 남용되었다. 국민의회는 이러한 폐단에 대해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논의하게 되었고, 뉘로르는 그 논의과정에서 관청의 정정강제제도의 취지를 개인에게도 확대하자는 생각 아래 언론에 의해 공격대상이 된 자에게 개인적 권리로서 반론권(droit do response)을 인정하자고 제안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반론권제도의 시초가 되었으며, 위 제안은 1822년 프랑스 언론 법에 규정된 이래 오늘날 유럽에서는 물론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입법화하게 되었다.

입법례에 의하여 반론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 사항을 제한함이 없이 반론권을 일반적 절대적 권리로 보장하는 프랑스의 법제와, 논평, 비판 등 가치판단 사항을 제외한 사실보도에 대해서만 반론권을 인정하는 독일법제로 대별할 수 있다. 개인의 명예, 프라이버시 등 개인의 인격적 법익의 침해에 대하여 엄중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영미법계의 국가에서는 반론권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하였다.

2. 프랑스

1822년 제정된 프랑스의 언론법(1835년, 1881년과 1919년)에 의하면 ①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 ② 지명 또는 지시된 자에 대해서는 응답권(또는 반박권)이 인정된다고 규정하여 (동법 제 13조) 위 2개의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아무런 실질적 요건의 제한 없이 응답권이 인정되고 있다. 판례도 응답권은 원문기사의 종류, 실해의 유무, 반박이익의 존부를 묻지 않고, 발생하는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성질을 갖는 권리로 파악하고 있다(산구준부, "반박권-프랑스법 중심으로) 현대 손해배상법 강좌, 일본평론사 1972. 271면 이하 참조).

응답권 행사에 대해 언론측은 무상으로 원문기사와 동등한 장소에 동등한 활자로 전문을 게재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해석상 ① 반박내용이 법령이나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경우 ② 제 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③ 신문기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반박권을 이렇게 일반적 절대적 권리로 강력하게 보호하는 프랑스에서 그 권리의 행사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 개인의 재량에 맡겨지고 있다. 그 권리의 행사가 거부된 경우 법원은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형사상의 제재까지 가할 수 있어 반박권은 명실공히 개인적 피해구제에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언론측에서도 반박권의 남용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반박문 게재청구에 성실하게 응하고 있다고 한다(산구의 전개논문 290면). 매일 수백 건의

정보를 다루는 언론의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보에 대한 반박권은 보도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귀중한 정보원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3. 독일

독일에서는 1831년 바덴주의 언론법이 프랑스 법상의 반론권제도를 본받아 최초로 입법한 후 이어 1874년의 제국언론법(Reichspressegesetz vom 7.5.1874)은 관청과 개인에게 정정보도문(Berichtigung)의 게재를 요청할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 제정된 거의 모든 주의 언론법은 반론권(Gegendarstellungsanspruch)을 입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반박권이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로 규정되고 있음에 비하여 독일 제주에서 입법화된 반론권은 언론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보다 합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세련된 구제절차가 부여되고 있다. 독일법상의 반론권은 정기간행물의 보도에 대하여 개별적인 연관성을 갖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형식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짐에는 프랑스와 다름이 없다(따라서 원보도의 진실성 여부는 청구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다).

그러나 ① 원문보도는 사실보도(Tatsachenbehauptung)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따라서 반론도 사실적 진술만이 가능하다) 프랑스법에 비하여 제한적인 권리로 규정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② 피해자는 반론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Berechtigtes Interesse)이 없는 경우 ③ 원보도가 입법기관의 공개회의나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에 충실한 보도(wahrheitsgetreue Berichte)의 경우 및 ④ 오로지 영업적 거래를 위한 광고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반론권이 배제되고 있으며, ⑤ 그 행사 및 집행절차에 있어서는 순수히 통상법원의 민사적 구제절차에 의하게 되어 있다.

독일에서 반론권은 연방헌법(Bonner Grundgesetz)이 최고의 규범적 가치로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를 갖는 권리이며, 전후 연방통상재판소(Bundesgerichtshof)에 의해 체계화된 일반적 인격권(allgemeine Persönlichkeitsrecht)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Martin Löffler, Presserecht, Band II, C.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München 1968, 213면, Wenzel, Das Recht der Wort- und Bildberichterstattung, 3. Aufl., Verlag Dr. Otto Schmidt KG, Köln 415면, Seitz/schmidt/Srllo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in Presse, Film, Funk und Fernsehen, Verlag C. H. Beck, München, 1980. 3면 참조). 본 기본법상 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발론권을 보호하는 규정에 의해 전개된 일반적 인격권은 그 중요내용의 하나로서 개인은 자기에 관한 서술이나 표현에 관하여, 즉 개인적인 정보에 관하여 스스로 그 공표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되고 있다.

반론권은 이러한 일반적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현대 대중사회에서 미디어의 개인영역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평가되고 있다(독일연방헌법재판소 1983. 2. 8. 결정, Wenzel의 전거서 415면)

연방통상재판소(BGH)는 Panorama 판결에서 반론권은 「개인의 인격권을 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개인(피해자)에게 그 법적으로 보호 받는 개인영역에 대한 미디어의 공격에 대응하는 자기방어의 수단으로서 자기에 관계되는 설명(보도)에 관해 그와 동일한 매체로서(장소에서) 동등한 공시효과를 가지고 자신의 시각에 따라, 자신의

표현으로 사실관계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한다(Wenzel의 전거서 415면)

독일연방헌법재판소 (Bundesverfassungsgericht)도 역시 1983. 2. 8의 결정에서 반론권은 여타 권리구제수단과는 달리 미디어의 개인 영역에 대한 공격에 대하여 기초적 사실관계에 관한 공중의 기억이 살아있는 기간안에 개인이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대중매체의 여건에 가장 적절한 권리이고, 언론법의 특수분야에서 미디어에 의한 개인법익보호를 위해 상세히 고안된 제도라고 하여 그 권리의 기능과 근거를 상술한 바 있다 (Wenzel의 전거서 415면).

요컨대 독일에서 반론권은 헌법상 최고가치를 의미하는 인간의 존엄권으로부터 추리개념화된 일반적 인격권의 한 실현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권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권리구제의 신속성 요청과 매스 미디어의 강력한 공격에 동등한 효과로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절차법상 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이 권리구성의 배경으로 되고 있다.

4. 영미

명예의식에 강한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영미에 있어서 보통법은 명예훼손에 관하여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어 법원의 강제에 의한 반론권제도를 입법할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 보통법상 명예훼손소송에서 원고(피해자)는 ① 문면상 명예훼손적(libelous per se) 내용의 공표를 소인으로 하는 경우 악의는 추정되고 그로인한 명예실추에 대하여 일반적 손해로서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고, ② 문언자체가 명예훼손적은 아니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특별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 그 이외에도 ③ 피해자는 가해자의 현실적 악의 또는 무분별함을 주장 입증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자력여하에 따라 징벌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제소당한 언론기관은 다액의 손해 배상판결로 파산할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고, 이를 면하기 위하여 취재, 편집, 보도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기울여지고 있다.

영미에서는 오히려 언론에 가혹한 이러한 명예훼손소송상의 책임을 감경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명예훼손소송에서 배심에 의한 사실인정, 진실의 항변, 현실적 악의의 입증 등 언론의 책임을 경감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다 철저히 보장하려는 입장에 있다 1843년 영국의 명예훼손법 (Lord Campbell's Libel Act of 1843)에 채용된 선택적 취소제도(optional retraction)는 언론의 오보에 대하여 충분한 사죄내용을 보도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감면할 수 있는 제도였다. 위 제도는 미국 각주의 입법에도 계수되었는데 역시 명예훼손소송에서 언론측을 보호하려는 데 중점이 있었기 때문에 대륙법계의 반론권제도와는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었다.

영국의 1952년 명예훼손법이 규정한 정정제의제도(offer of amends)도 같은 취지의 제도이다. 이것은 언론이 보도함에 있어서 특정 개인을 지칭하거나 개별적 연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도했으나 결과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 경우(이른바 unintentional defamation 또는 innocent publication)에는 피해자의 제소 직후언론이 일정요건하에서

정정하겠다는 제의를 함으로써 손해배상을 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Robin C. Smith, Press Law, Sweet & Maxwell, London, 1978 18 면 이하, Stig Strömholm, Right of Privacy and Rights of The Personality—A Comparative Survey, p A.Norstedt & Sönners Förlag, Stockholm, 1967, 161 면, 팽원순, 매스커뮤니케이션 법제이론, 법문사 1988, 207 면 참조).

그러나 매스컴사회로 발전한 현대에 이르러 개인의 명예 보호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법적 보호제도의 필요성은 영미에서도 예외가 아니었고, 영미학자들도 대륙법계의 반론권제도는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영국에서는 과거 5년간 3 차례 반론권 법안 이 의회에 제출된 바 있었으나 1988. 12. 21. 워딩턴 (Tonny Worthinton)의원의 반론권 법안은 의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어 미구에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 법률안은 종래 자율규제기관인 신문평의회 (Press Council)가 일반시민에게 충분한 법적 보호를 줄 수 없었던 사실을 고려하여 독일식의 반론권을 일반시민의 새로운 권리로 규정하고, 그 분쟁을 심리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위원회와 유사한 언론위원회 (Press Commission)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 법률안에 의하면 ①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사실적으로 부정확한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는 그 부정확한 보도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반론권(right of reply)을 가지며, ② 적법한 반론권 행사가 있는 경우 언론은 무료로 다음 발행호에 원 기사와 동일한 지면에 동일한 크기로 정정 기사를 게재해야 한다. ③ 반론권에 관한 신청을 심리하고 집행할 언론위원회는 내무상이 인종, 성별 및 지역적 대표성을 고려하여 임명하는 위원 21 인으로 구성되며, 신청이 있는 경우 동 위원회는 사실적 정확성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있고, 그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④ 언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고등법원에 제소하여 그 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1989. 봄 48 면 이하 참조).

미국에서도 1947 년 언론자유위원회(Commission on Freedom of the Press) 의 일반 보고서를 집필한 저명한 언론법학자인 Zechariah Chaffee, Jr. 교수는 종래 영미의 명예훼손법상의 손해배상제도에 비하여 월등히 훌륭한 대륙식의 반론권제도를 도입하여 입법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상세한 내용은 2. Chaffee, Government and Mass Communications, A Report from the Commission on Freedom of the Press, Archon Books, Hamden, Connecticut, 1965, 172 면 이하 참조)

이미 미국에서도 플로리다주와 미시시피주는 신문의 경우에 공직선거의 입후보자에게 반론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이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1974 년 Miami Herald v. Tornillo 사건 판결(418 U.S 241)에서 고전적인 신문의 자유개념에 입각하여 신문에 게재할 재료의 선택과 기사의 내용이나 크기에 관한 결정은 편집자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개입하는 플로리다주법상의 반론권제도는 연방수정헌법 제 1 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팽원순, 매스커뮤니케이션 법제이론, 법문사, 1988, 210 면). 그러나 이 판결은 이미 1960년대부터 적극화 돼 온 알 권리 내지는, 액세스권 보호 움직임에 대변하는 학자들에 의해 강력히 비판받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방송에 있어서는 1934 년 제정된 연방통신법 제 315 조가 공직선거의 입후보자에게 평등한 시간 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equaltime rule)를 명문으로

인정하였고, 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이른바 공평의 원칙(Fairness Doctrine)이라는 이론으로 공적 쟁점사항에 관한 반론권을 개인의 미디어에 대한 액세스권의 하나로써 발전시켰다(상세한 내용은 리상희, 방송론, 법문사, 1981. 155면 이하 및 박용상, 방송법제론, 교보문고, 1988, 186면 참조), 최근 레이건 행정부의 보편주의적 경향에 영향받는 FCC가 공평원칙을 위헌이라는 이유로 폐기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이에 반발한 의회는 오히려 공평원칙을 연방통신법에 명문화하는 법률안을 가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었고, 결국 공평원칙의 위헌 여부는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넘겨지게 되었으나 그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다.

IV. 우리 헌법의 해석론

1. 반론권 제도의 헌법적 근거

우리 헌법 제 10 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을 헌법상 최고의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제 17 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비추어 보면 우리헌법에서도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 내지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보장됨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지배적인 학설을 종합하여 보면 프라이버시의 권리 내지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내용은,

① 여건적 상태에서 인격기반의 불가침성에 대한 권리 (신체, 주거, 장서등 사적인 생활공간의 침입에 대한 거부),

② 정적인 상태에서 인격내용의 불가침성에 대한 권리로서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본질(사유, 감정, 정서 등) 또는 개인의 동일성의 표상(성명, 초상, 혈통, 명예 등)에 대한 침해에 저항하고 그 공개와 이용의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③ 동적 상태에서 인격의 자기초월의 자율성에 관한 권리로서, 언어에 의한 사적 정보(서신, 전신, 전화를 통신내용)와 사적 행동(사생활 또는 사적 결사에 가입 등)에 대한 감시에 저항하고 그 공개와 전파의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인격에 대한 권리는 국가권력을 포함하여 모든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절대적인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 독일에서 일반적인 학설의 견해이다.(오십남청, 서독일에서 보이는 사생활의 사법적 보호-일반적 인격권 이론의 발전, 계능적효, 이등정기편-프라이버시 연구, 일본계편사, 1972, 181면 이하 참조) 정보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매스 미디어에 의해 개인의 정보가 상품화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인격권 보호는 현대법학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일반적 인격권의 절대권적 성격에 비추어 그 침해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외에도,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방해예방청구권과 방해배제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 우리의 경우에도 그대로 수용될 수 있으며, 반론권 제도가 이러한 일반적 인격권을 보호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권리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우리 헌법하에서도 일반적 인격권이 보장되며 (김철수 전거서 290 면, 권영성 전거서 338 면, 허영 전거서 199 면 참조), 이를 매스 미디어와의 관계에서 가장 잘 보호하고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반론권도 우리 헌법상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정간물법은 이렇게 헌법상 근거를 갖는 반론권을 그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과 구제절차를 명문화하여 실정법상의 권리로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헌법상 언론자유 보장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제 21 조)는 개인적인 의견표현의 자유와 함께 매스 미디어에 의한 언론의 자유의 제도적 보장을 포함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학계에서도 다수설의 입장이다(김철수, 신헌법학 개론, 박영사 1980, 389 면, 권영성 신고헌법학원론, 법문사 1981, 379 면,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중), 박영사 1988, 375 면 참조).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언론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권에서 유래되는 개인주의적 자유권의 요소와 함께 민주국가의 질서 구성에 불가결한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로서 객관적 질서의 측면을 함께 갖는다고 이해되고 있다(상세한 내용은 박용상, 언론의 자유와 공적 과업, 교보문고, 1982, 212 면 이하 참조).

언론자유는 객관적 측면은 현대 대중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매스 미디어)이 담당하는 여론형성기능을 중심으로 하게 되고 그 내용으로서 자유언론제도의 보장은 언론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재, 보도, 논평 등 실질적 자유에 있어서는 물론 언론기업의 영업상의 자유까지 보장하며, 언론활동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언론의 특권을 제도화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언론은 올바른 여론형성의 전제가 되는 진실보도를 위하여 보도사항의 진실성, 내용 및 출처에 관하여 심사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특히 보도가 개인의 법적으로 보호 받는 이익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론형성이라고 하는 공적 이익과 개인법익의 보호라는 법익간의 조정을 위한 제도를 필요로 하게 된다.

3. 자유언론의 제도와 정정보도 청구권

언론보도가 법적으로 보호 받는 개인의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인간의 존엄권으로부터 연원하는 일반적 인격권과 역시 같은 뿌리를 가지는 객관적 제도로서 이해되는 언론의 자유라는 또 하나의 헌법상 보장 받는 법익이 충돌하여 긴장관계가 야기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에 동일한 뿌리를 갖는 개인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규범체계상의 우열을 기계적으로 가질 수는 없다. 그것은 헌법전체의 가치체계로부터 규범가치 상호간의 조화적 조정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의 인격권이 인간의 존엄을 구체화한 일반적 권리고, 인간의 존엄이 우리 헌법상 최고의 가치규범을 의미한다면 객관적 질서의 제도적 측면인 매스 미디어의 자유 속에는 재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현대 대중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이행하는 사회상황 아래서 매스 미디어는 거대한 자본과 인원을 가지고 대량정보의 전달기술을 구사하게 되어 막강한 사회세력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공격당 한 개인은 무력하기만 한 것이다.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신문 등 대중매체의 기능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존엄권의 희생 위에서 기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유언론제도의 보장은 오히려 그 제도속에 개인적 인격권의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포괄하여야 한다. 기존의 민·형사상의 법적 구제제도의 미비함에 비추어 구주제국에서 입법화된 반론권 제도는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언론제도의 내용으로 포섭되어야 한다. 여론형성의 장으로서 미디어의 지면과 프로그램에 반대견해의 표현 가능성을 보장하자는 것이 현대 언론법상 논의되고 있는 접근이용권(access right to media) 이론의 본질이지만, 반론권은 이러한 필요성에 더하여 개인적 법익 보호를 도모한다는 또 하나의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다.

반론권 제도는 전술한 외국의 학설 판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현대 마스크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법익간의 긴장·충돌 관계를 조화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제도인 것이다.

다만,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측에 대하여 피해자의 정정보도문을 무료로 게재할 의무를 의미하게 되므로 신문의 자유로서 편집권과 방송의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논란될 수 있다. 실상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플로리다주의 반론권법을 위헌이라고 판시한 이유도 언론의 자유를 발행인이 주체가 되는 고전적 자유개념에 근거한 때문이었다.

이에 대하여 독일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개인에 대한 특별희생(Sonderopfer)을 발생케 한 경우에는 개인에게 그 보상을 구할 수 있는 권리(aufopferungsanspruch)로서 반론권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사법 관계에서도 통용되므로 각 개인은 자신에 관계되는 보도로 인하여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언론의 개인에 대한 보도가 헌법상 언론자유 보호범위내에 포섭되는 한 개인법익의 침해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헌법이 언론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입게된 특별희생을 의미하게 되고, 관계된 개인에게는 그에 대한 보상(ausgleich)을 구할 권리가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 그 보상은 관계된 개인으로 하여금 언론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언론기관이 동등한 손해를 감수하게 함으로써 만족될 수 있다. 그럼에도 언론기관은 대량전달능력을 가진 반면 피해자에게는 아무 공시수단도 없다.

피해자의 언론자유가 무기대등의 원칙이나 쌍방의 의견을 들어야 정오가 발견된다는 원칙(audiat et altera pars)을 충족하려면 피해자에게 원 보도를 행한 인쇄매체나 방송매체에 반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동등한 독자 범위나 시청취자 범위에 청문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다. 결국 언론의 공격 대상이 되어 특별희생을 감수한 피해자에게는 그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상응한 보상으로서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Wenzel 전계서 416 면).

V. 정간물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

1.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

(1) 반론권

우리 정간물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독일법계의 반론권을 입법한 것이다(박용상, ‘언론기본법’, 김철수편, 정치관계법, 박영사 1983, 202 면 참조).

정정보도청구권은 ①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의 보도가 ② 사실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③ 그 사실보도에 개별적 연관성을 가지고 언급된 피해자에게 인정되며 (정간물법 제 16 조제 1 항), 그 상대방인 언론사는 스스로 정정 또는 취소하는 내용을 보도할 의무가 아니라 피해자 자신이 작성한 정정보도문(반론)을 무료로 보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동법 제 16 조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참조) 서구의 반론권 제도를 입법한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정간물법은 구언론기본법이 채용한 「정정」 보도청구권이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적 성격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다. 혹자는 이를 종전의 정정권 또는 정오권과 혼동하여 정정보도청구가 있으면 언론사 자신이 정정보도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법원의 재판으로 명하여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데 거부감을 불러 일으킨 사례도 있었다. 대법원 판결(1986. 1. 28. 선고 85 다카 1973)도 「(구)언론기본법 제 49 조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제목의 표현과는 달리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기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이의 대상인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며」 이런 점에서 위 권리의 제목이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반주보도청구권이라고 표현하였어야 옳을 것이라고 용어에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정간물법을 개정하는 기회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임은 물론이지만 이러한 용어에의 잘못이 위헌논의의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실무상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이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안에 관하여 제목과 내용을 적절히 조정한다면 이를 게재해야 하는 언론사의 불만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2)형식적 권리

정간물법이 규정하는 정정보도청구권은 전술한 독일법계의 제도를 따라 그 청구의 대상을 사실보도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 절대적 권리로 인정되는 프랑스법상의 반주권보다 제한적인 권리로 구성되고 있다. 의견표현 즉 가치판단사항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경우 언론의 비판 및 논평기능에 위축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과 개인의 이익간에 조화를 도모하려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정정보도청구권은 앞서 본 형식적 요건만 충족되면 언론보도의 위법성 여부, 진실여부, 그 귀책사유의 존부나 그로 인한 손해발생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발생한다는 점에서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와 같이 형식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반론권이 이러한 형식적 권리로 구성될 수 있는 법리적 근거에 대하여는 앞서 본 독일의 특별희생에 대한 전보청구권의 이론이 이를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고 있다. 언론의 특정개인에 대한 공격적 보도가 헌법상 언론의 자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헌법상 보장되는 것이지만(따라서 그것은 위법한 침해가 아니다)언론의 보도대상이 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언론자유가 보장됨으로써 특별희생을 강요 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희생에 대한

정보를 위하여 피해자인 개인은 보도매체에 대하여 동등한 공시효과를 갖는 동일한 매체로써 자기의 언론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반론권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론권은 언론의 적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이입은 특별희생의 보상을 구하는 권리이며, 위법성 이론에 근거한 종전의 민법상 불법행위제도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반론권이 인정됨으로써 언론기관이 부담하는 반론보도 의무에 대하여 불법행위법상 이론에 근거한 항변이나 비판은 합당한 논거를 가질 수 없다.

정정보도청구권이 형식적 권리로 인정되기 때문에 언론이 진실을 보도한 경우 또는 진실여부에 관한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정정보도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면 사회통념이나 정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이 종전 불법행위법 또는 형사 명예훼손 법상의 책임론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반론권 제도의 기존 이론을 간과한 주장임은 이상의 설명에서 명백히 간취할 수 있다. 종래 명예훼손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진실성의 입증으로 면책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진실한 보도라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책되지 아니하며 (형법 제 307 조, 제 309 조, 제 310 조 참조),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침해에 있어서는 공적 이익을 갖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실한 보도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영미 판례법상 확립된 이론이다).

관점을 바꾸어 보더라도 보도사항의 허위성을 반론권 행사의 요건으로 삼는다면 신속한 반대진술 권리를 보장하려는 반론권의 제도적 의의는 크게 상실된다. 보도사항의 진실여부에 관하여 언론사와 피해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채증절차와 증거법칙에 따라 일반 통상인의 입장에서 심리 판단하는 법관의 결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심판절차가 장기간을 소요하게 됨은 물론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본지로 하는 반론권의 제도적 취지에 적합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반론권이 형식적 권리로 인정됨으로 인하여 언론사는 그 남용에 대처할 수 없고 결국 언론자유에 대한 위축이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정간물법은 2 가지 측면에서 배려를 베풀고 있다. 첫째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반론권의 대상인 언론의 공표내용을 사실보도에 국한하여 논평·비판 등 의견 표현이나 가치판단 사항을 제외하고 있는 점이고, 둘째로는 반론권이 배제되는 예외 사유로서 ① 행사함에 상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② 청구된 정정보도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경우 ③ 상업적 광고의 목적만을 위한 경우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정간물법 제 16 조 제 3 항 단서).

예외사유 중에서도 특히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요구하는 사유는 권리의 행사에 실질적 이익을 요구함으로써 반론권의 형식성을 완화하고, 피해자의 남용적 권리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가한 것이다. 이미 원문 보도에서 피해자측의 충분한 해명이나 입장이 함께 기술되었다거나 언론 스스로가 속보로써 충분히 피해자의 주장을 보도하였다면 반론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성실한 취재와 공정한 보도를 자임하는 언론사라면 매일 지면 가득히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할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2. 권리의 행사절차

(1) 행사기간

정간물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신문, 통신, 방송의 경우 14 일이고, 기타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 월로 제한되어 있다(동법 제 16 조 1 항). 프랑스에서는 원보도 후 1 년이고, 독일 법에서는 3 개월로 정해져 있는 것에 비교하면 정간물법상의 권리 행사기간은 상대적으로 단기의 제척 기간을 정하고 있다.

(2) 행사절차

정간물법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동법이 규정하는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정정보도청구권을 갖게 되고 위 청구권의 행사를 받은 언론사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생긴다. 프랑스의 경우 반론권은 일반적 절대적 권리로 인정되기 때문에 반박문을 수정함이 없이 전문을 보도할 의무가 생기고,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독일법상으로도 동법의 요건에 해당하는 반론권행사가 있으면 반론문의 크기가 원보도의 자수를 초과하지 않는 한 언론사는 청구서를 접수한 시점에서 인쇄 완료되지 않은 호에 이의 대상인 보도 본문과 동일한 부분에 동일한 문자로 반론문을 첨삭함이 없이 인쇄 보도하여야 한다. 언론사가 이를 거부하면 곧바로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간물법은 법원에 제소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동법 제 18 조 제 1 항, 제 19 조 제 1 항 참조)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요체로 하는 반론권의 행사절차에 있어서 모법인 프랑스 법이나 독일법에 비하여 피해자측에 불리한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론중재제도는 ① 새로운 생소한 제도의 도입에 따른 언론활동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② 피해자의 권리 남용에 대처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③ 중재절차에서 언론사와 피해자간에 호양에 따른 명예로운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언론중재제도의 존재의의에 대하여는 박용상, 새 정기간행물법상의 정정·추후 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제도, 대한변호사협회회지 1988 제 139 호 및 1988/4 제 140 호 참조).

그동안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보더라도 동위원회는 언론 피해자에 대한 조력자로서, 언론분쟁에 관한 조정자로서, 언론의 개인법익 침해에 대한 감시 및 보고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다.

3. 법원의 심판 절차

정간물법은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통상 법원에서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가처분 절차에 따라 심판하도록 하고(동법 제 19 조제 2 항, 제 3 항), 언론사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하등 벌칙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반박문 게재의무를 거부한 경우 민사배상이나 법원의 게재명령 이외에 형사벌(벌금 180 프랑 이상 1800 프랑 이하)을 과하는 프랑스에서와는 달리 정간물법은 정정보도청구사건에 관한 분쟁을 철저히 언론사와 피해자간의 민사적 분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정보도청구권의 제도적 취지는 권리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에 있으므로 그 심판절차에 있어서도 그 본질을 살리기 위한 절차적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정간물법은 신속한 심판을 담보하기 위하여 서독 제주의 언론법을 본받아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되 일반 가처분 절차에서 신청인이 입증 의무를 부담하는 보전의 필요성 (즉 사후승소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될 위험)에 관한 입증을 면제하고 본안 소송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 19 조 제 3 항, 민사소송법 제 697 조, 제 705 조)

정정보도청구 사건의 심판절차가 신속한 가처분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하여도 그 자체는 잠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정정보도청구권을 궁극적으로 실현함을 목적으로 특별히 규정된 본안 절차이기 때문에 종전의 소송법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형태의 소권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심판절차가 실제법상 인정되는 정정보도청구권의 특수한 제도적 취지를 절차법상 살리기 위한 방안임은 물론이다.

대법원의 정정보도등 청구사건 심판규칙(1988.3 4. 공표 대법원규칙 제 1003 호)은 나아가 법원이 정정보도 명령을 내림에 있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를 공탁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언론사가 훼손을 함으로써 집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도를 차단하고 있다(동규칙 제 7 조 제 3 항, 민사소송법 제 700 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제 702 조).

그러나 동규칙은 정정보도 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즉시 집행력이 생기는 재판임을 감안하여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쌍방을 필요적으로 심문하도록 하여 (결정에 의하여 정정보도 명령을 내리는 경우) 당사자 쌍방의 청문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실무상으로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정정보도 명령이 내려짐이 보통이다.

정정보도문의 보도를 명하는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즉시 집행력을 가짐은 물론이다. 정정보도를 명하는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는 이의신청(결정의 경우) 또는 항소(판결의 경우)로 불복할 수 있다. 불복으로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원의 정정보도명령의 재판은 소송법상 이른바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것이므로 언론사가 위 재판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 693 조에 따라 간접강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서울대 법대. 서독 프라이부르크대.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
- 저술 및 논문: 「출판의 자유와 공적 과업」, 「언론의 자유와 책임」, 「언론과 프라이버시」 외
- 현재 서울민사지방법원부장판사